

[보장내용]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3.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제조달가액】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보험가액】

제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제조달차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에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부가설명】

보험가입금액 5억원 가입시

보험목적A : 보험가액 6억원 → 보험가입금액 3억원

보험목적B : 보험가액 4억원 → 보험가입금액 2억원
(합계 10억원) (합계 5억원)

※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④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⑤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이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며 재조달차액을 보상합니다.

【재조달차액】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보상)의 종류, 보험금지급사유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화재손해	①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②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 ※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한도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화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흉터성형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table><tr><td>안면부</td><td>14만원</td></tr><tr><td>상지/하지</td><td>7만원</td></tr></table> ※ 3cm 이상에 한하며 1cm당 금액임 최고 500만원 한도임	안면부	14만원	상지/하지
안면부	14만원					
상지/하지	7만원					
강력범죄피해(주택내)	주택내에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벌금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table><tr><td>실화</td><td>1,500만원 한도</td></tr><tr><td>업무상실화 중실화</td><td>2,000만원 한도</td></tr></table> ※ 1사고당 금액임	실화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실화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특약의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table><tr><td>실화</td><td>1,500만원 한도</td></tr><tr><td>업무상실화 중실화</td><td>2,000만원 한도</td></tr></table> ※ 1사고당 금액임	실화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실화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table><tr><td>과실치상</td><td>5백만원 한도</td></tr><tr><td>과실치사</td><td>7백만원 한도</td></tr></table>	과실치상	5백만원 한도	과실치사	7백만원 한도
과실치상	5백만원 한도					
과실치사	7백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 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 송달료 500만원 한도				
붕괴·침강·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특별 약관 관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	보험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천만원 한도					
			※ 1인당 금액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신1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신1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온수매트, 음식물처리기, 컴퓨터	보험가입금액 한도						
	2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온수매트, 음식물처리기, 컴퓨터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배상책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 <table><tr><td>사망</td><td>1억원 한도</td></tr><tr><td>후유장해</td><td>1억원 한도</td></tr><tr><td>부상</td><td>2천만원 한도</td></tr></table> - 대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 (1일이상90일한도)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주택)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제외)(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본인 또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대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제외) : 1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대물사고(누수제외) 20만원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포함)(누수 50만원, 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본인 또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대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제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 : 1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누수제외) 20만원 - 대물사고(누수) 5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포함)(누수 100만원, 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본인 또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대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제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 : 1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누수제외) 20만원 - 대물사고(누수) 1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포함)(누수 200만원, 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본인 또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대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제외) : 1억원 한도 - 대물(누수) : 1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누수제외) 20만원 - 대물사고(누수) 200만원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자기부담금 차감 등 보장내용 제한 사항

특약명	자기부담금 차감(금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제외)(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대물사고(누수사고 제외) 시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포함)(누수 50만원, 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대물사고(누수사고 제외) 시 20만원 대물사고(누수사고) 시 5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포함)(누수 100만원, 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대물사고(누수사고 제외) 시 20만원 대물사고(누수사고) 시 1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및폭발 제외)(누수 포함)(누수 200만원, 대물 20만원 공제)(갱신형)	대물사고(누수사고 제외) 시 20만원 대물사고(누수사고) 시 2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 10만원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1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2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2만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부터 입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및 벌금 관련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